

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21. 11. 11.(목) 석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온라인: 2021. 11. 11.(목) 오전 06:00 이후		총 6쪽 (붙임 4쪽 포함)
배포일시	2021. 11. 10.(수)	담당부서	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
담당과장	채명숙(02-2100-6421)	담당자	김윤경 사무관(02-2100-6422) 장혜수 주무관(02-2100-6430)

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입법예고

- 스톱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-
- 스톱킹 실태조사, 예방교육, 피해자지원시설 활용, 경찰 현장출동 등 근거 마련
 - 스톱킹처벌법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피해자 보호·지원 강화 기대

- 여성가족부(장관 정영애)는 스톱킹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을 11월 11일(목)부터 입법예고한다.
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(21.4.) 이후 지난 4월부터 여성가족부는 스톱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·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,
 - * (개선 전) 보호시설 입소 미지원 → (개선 후) 보호시설 입소 지원
-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 연구(한국여성정책연구원)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,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였다.
- 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톱킹 예방,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법적·제도적 장치*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,
 - * 스톱킹 신고체계의 구축, 조사·연구, 교육·홍보, 시설의 설치·운영, 지원서비스 제공(법률구조, 주거지원, 자립지원 등), 협력체계 구축, 신변노출 방지 등





-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.
-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 금지와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의무,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,
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*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 - *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, 긴급전화센터(1366),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,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(해바라기센터)
-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현장출동 시 가해자·피해자 분리 조사, 조사 거부·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였다.

□ 여성가족부는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」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,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에 관한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*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피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*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(피해자보호명령),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안(신변안전조치) 등

□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(www.mogef.go.kr)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국민 누구나 인터넷,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【붙임】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

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표시)"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·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토킹”이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스토킹 행위 또는 제2호의 스토킹범죄를 말한다.
2. “스토킹행위자”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스토킹 행위 또는 제2호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피해자”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자를 말한다.
4. “피해자등”이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 등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스토킹 예방·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들을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4. 법률구조와 주거지원, 자립지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
5.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6.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들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7. 피해자들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·지원체계 구축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,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예방교육의 실시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) 누구든지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과 관련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등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취학 지원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(피해자등이 보호 또는 양육하는 사람에 한한다. 이하 같다.)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(입학·재입학·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피해자지원시설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등과 가족의 보호·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, 제5조에 따른 상담소, 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상담소, 제12조에 따른 보호시설, 제18조에 따른 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등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(이하 “피해자지원시설”이라 한다.)이 피해자등과 가족을 지원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피해자지원시설의 업무) 제8조에 따른 피해자지원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“가정폭력”, “성폭력”은 “스토킹”으로 본다.

1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업무, 제6조에 따른 상담소의 업무, 제8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업무
2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상담소의 업무,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업무,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업무

제10조(보수교육의 실시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·방법·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) 피해자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보호·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.

제12조(수사기관의 협조) 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은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(지구대·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)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3조(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) ①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스토킹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장소, 피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출입,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·신고자·목격자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

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(비밀 엄수의 의무) 제8조에 따른 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벌칙) ① 제6조를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·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스토킹행위자

제16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